

<서식6>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부서/과제담당관	보상정책과 / 과장 나치만	담당공무원	황선우 사무관
연구 방식	1.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수의계약		
연구 기간	2012. 5. 11 ~ 2012. 10. 31 ( 6개월 )		
연구 결과	<p>이 연구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방안을 발굴·확충하여 중·장기적인 보훈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 보상수준에 대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와 보훈정책과의 연계방안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훈제도 발전을 위한 유용한 방향성을 도출함. &lt;별지 1 참조&gt;</p>		
평가 결과	<p>&lt;별지 2 참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자 지원방안과 관련된 현행제도 실태분석, 국민인식조사 및 2차 자료 분석, 정책대안 개발 등을 수행한 연구로서 목적과 부합함.</li> </ul> </li> <li>• 추진방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국민의 인식조사, 국가유공자 생활실태조사, 타 정책과의 비교 등의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함.</li> </ul> </li> <li>•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업지시서상의 연구 내용 및 방향, 과업의 세부 내용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반영하고 있음.</li> </ul> </li> <li>•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부정행위 발견할 수 없었음.</li> </ul> </li> <li>•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대안의 구체성이 확보되어 있어 정책 적용가능성이 높아 보임.</li> </ul> </li> <li>•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시된 유익한 정책과제 연구임.</li> </ul> </li> </ul>		
평가자 확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최균 교수	보상정책과장 나치만

## 연구 결과

### 1. 관련 복지제도 개선방안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 ○ 공제소득 범위 확대방안

- 참전명예수당 중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공제율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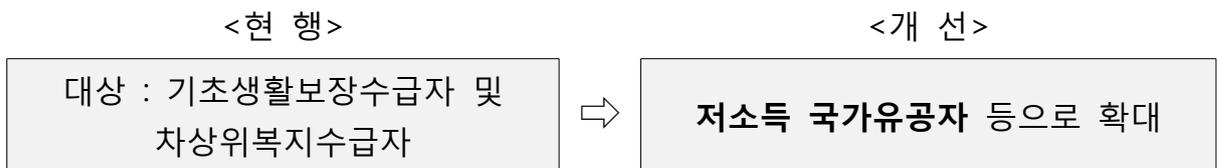
- 고령 참전유공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적용  
※ 현행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공제율 5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율 30% 등
- 소득인정액 책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 일반 재산에서 주거용 재산을 분리, 보다 낮은 환산율 적용
  -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유 자동차를 일반 재산에서 제외 또는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100%에서 하향 조정 등

#####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1촌 직계 및 그 배우자)에서 비혈연 1촌(배우자)을 제외
-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인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완화
- 생활조정수당을 부양의무자 소득산정 공제항목에 포함

- 국민주택규모 미만 재산에 대해 부양능력 판정 재산기준 완화
- 국가유공자의 부양비 징수 면제 또는 급여 차감률 완화
  - 부양능력 미약 판정 시에도 부양가족으로부터 일정 부양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가정, 15% 또는 30%를 차감 후 급여 지급
  - ※ 부양비=(부양의무자 소득-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130%)×30%(또는 15%)
  - 보훈대상자 중 수급자가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부양비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 ○ 정부양곡 할인제도 대상 확대



※ 정부수매 일반미 기준 판매가격의 50% 수준에서 1인당 월 10kg, 1인 가구 1회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

### 나. 기초노령연금제도 연계

-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한해 기초노령연금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
  - ※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액인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인상 방안 검토 중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경계에 있는 경우 소득역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금액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는 방식 미적용 방안

## 2. 수당 지급 개선방안

- 의원발의 법률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안보다는 저소득자 생활안정에 도움 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이 적절
- 우선순위를 정해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 3.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체제도 운영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어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을 분리하여 보훈정책 별도의 제도로 편입시키는 방안
  - 장점 : 국가유공자를 일반 저소득자와 동일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규범적인 문제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개선방향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등
  - 단점 : 고령의 수권자 사망 시 현 세대의 유족들을 위한 제도로 기능할 가능성, 타법 지원과의 관계 문제,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 등

### 4. 기타 제도 개선방안

- 전체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정비
  - 수준조사와 사례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등
- 약제비 지원제도 변경(국비 先지원 → 건강보험 先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 ※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현재 30%~10% 감면
- 상이자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현금급여 외에 부가되는 현물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등 참조
-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도입
  - ※ '12. 2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7천여명 가입, 24개 금융기관 참여

## 【별지 2】

# 평 가 결 과

### 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방안과 관련된 현행 제도 실태 분석, 국민 인식조사 및 2차 자료 분석, 정책대안 개발 등을 수행한 연구로서 목적과 부합함.
- 최근 국회에서 국가유공자 관련 대상자 발굴 및 지원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의 제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 2. 추진방법의 적절성

- 일반국민의 인식조사, 국가유공자 생활실태 조사, 타 정책과의 비교 등의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함.
- 특히, 기존의 조사자료를 활용해서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며, 향후 연구모집단의 확대 구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관련 공무원과의 FGI 방법의 활용을 통한 의견 정리는 정책대안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임.

### 3.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과업지시서상의 연구 내용 및 방향, 과업의 세부 내용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반영하고 있음.

-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우리나라 정책 개선을 위한 대안에 어떻게 반영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다소 미흡함.

####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 연구부정행위 발견할 수 없었음.

####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정책 대안의 구체성이 확보되어 있어 정책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관련 복지제도 개선방안의 제시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의견에 대한 검토도 포함시켰으면 보고서의 완성도를 보다 제고시킬 수 있었을 것임.
- 생활조정수당 개선방안은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제도설계 구조가 다소 복잡한 편이며, 이의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예산분석까지 이뤄졌었다면 보다 바람직한 보고서의 형태를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에 충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됨.

#### 6. 기타사항

-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시된 유익한 정책과제 연구임.
- 기존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나, 참고문헌의 수가 너무 적게 제시되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